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약칭: 화학제품안전법)

[시행 2019. 1. 1] [법률 제15511호, 2018. 3. 20, 제정]



제24조(제품승인의 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제21조,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
2.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 - 가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(이하 "중점관리물질"이라 한다)
 - 나. 나노물질
 - 다.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
3.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·효능이 충분할 것
4.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

부칙 <제15511호, 2018. 3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